

행정자치부

주 의 요 구

제 목 숲가꾸기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원주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화천군

내 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2010. 1. 25.자로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법률 제9961호, 2010. 1. 25.)에서 개정 규정 시행일을 5년이 경과한 날(2015. 1. 26.)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은 3ha 이상의 조림 또는 벌채사업, 50ha 이상의 숲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 사방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임도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강원도 ○○○○연구원(1건), 원주시(2건), 삼척시(15건), 횡성군(9건), 영월군(4건), 화천군(2건)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33건, 3,361.71ha에 대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발주하였고,

사업자 선정 시 ○○○○연구원 및 5개 시·군에서 같은 법 제23조의 대행 하거나 위탁 조항에 따라 ○○○○중양회 등 ○○○○에 수의계약하여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2015. 1. 26.부터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등의 숙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 숲가꾸기사업은 ○○○○ 또는 ○○○○ 중양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없는데도, 강원도 ○○○○연구원 및 원주시 등 5개 시·군에 3,361.71ha의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부적정하게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 원주시장, 삼척시장, 횡성군수, 영월군수, 화천군수는

산림사업계약자 선정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업자와 계약하도록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사업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